

교보다이렉트운전자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

- 1)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 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 위험직종 근무자, 위험운동 참가자 등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 1)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않은 상해사고시 고액의 보장을 받습니다.
- 2)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적용됩니다.
- 3)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100만원까지)
- 4) 보험기간 : 1년, 3년
- 5)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 6)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보통 약관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주)}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1년 이내에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3% ~ 100%
	교통상해 의료비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180일한도)
특별 약관	벌금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
	방어비용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형사합의 지원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면허취소 위로금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상해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사고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 금액을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주)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2) 보험수익자의 고의
- 3)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5)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6)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예시

(단위 : 원)

구 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통약관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	42,727
	교통상해의료비	100만	
특별약관	별 금	2,000만	73,653
	방어비용	200만	
	형사합의지원금	2,000만	
	면허취소위로금	100만	
보 험 료 합 계			116,380

※ 보험료산출기준 : 비운전직, 자가용운전자, 보험기간 1년, 일시납

4.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 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